##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0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용우·이원택·박홍배

전진숙 · 정혜경 · 김태선

김 윤•박용갑•김우영

이학영 · 천하람 · 김주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 3항제3호).

법률 제 호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3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한</u> 자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